

삼성토탈 이어 삼성전자까지...

공정위 조사방해로 과징금 6000만원 부과받아 ... 삼성이 4건

삼성토탈에 이어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가 적발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 조사방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0일 삼성그룹 계열사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세메스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삼성전자에 2000만원, 조사방해행위에 나섰던 삼성전자 김OO 부장과 이OO 과장에게 각각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4년 11월 세메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앞두고 세메스와 사전점검회의를 하면서 부당하도급 행위를 감추기 위해 관련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광수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특히,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내부 전산망 가동중단, 업무분장표 삭제 등 대처요령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작성해 세메스 조사과정에서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처요령을 담은 <점검 및 확인 요망사항>이라는 대외비 문건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앞서 그룹 내부 전산망인 <싱글>의 가동을 중단하고 △조직도·전화번호부·업무분장표 삭제 △직원의 개인컴퓨터(PC) 점검 △전직원의 비망록 폐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 폐기 또는 이관 △조사관 도착시 공문 확인 후 사업장 입장 허용 △조사관 한명당 직원 한명이 붙어 관리 △메일 검사사항을 본사로 보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삼성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

구 분	조사방해 내용	조 치
○ 삼성자동차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건(1998년 11월)	○ 삼성자동차 직원 3명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수행하던 조사관으로부터 증거자료를 빼앗은 후 파쇄해 조사를 방해하고, 삼성자동차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 과태료 부과 - 법인 - 임직원 2명
○ 삼성카드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거부·방해행위에 대한 건(2001년 1월)	○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조사관 5인을 삼성카드 직원 다수가 저지하고 수차에 걸친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조사방해 행위	○ 과태료 부과 - 임직원 2명
○ 삼성토탈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건(2005년 4월)	○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증거자료를 삼성토탈 직원 4명이 조사관들로부터 탈취해 릴레이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빼돌려 폐기한 행위	○ 과태료 부과 - 임직원 4명

+ 총 8건 중 4건이 삼성 계열사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조사방해는 현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관련서류를 은닉·과기하는 등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삼성전자 사건은 조사에 앞서 사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던 조사방해 사건 8건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가 관련된 사건이 4건에 달한다고 삼성그룹의 조사방해 사건을 별도로 소개했다.

1998년 삼성자동차 조사방해, 2001년 삼성카드 임직원 조사거부·방해사건, 2005년 삼성토탈 조사과정에서 자료 탈취사건 등이 모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화학저널 2005/09/22>